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퀸즐랜드 주 한인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of Queensland Inc.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한-호 국민간의 상호 이해 및 우호 증진을 유지하고 배달민족의 후예로서 긍지를 심기 위한 후세 교육 및 회원 복지를 위한 사업계획 추진과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관할구역 및 본부)

본회는 퀸즐랜드 주 전체를 관할하며 본회의 본부는 브리즈번이나 골드코스트 또는 그 중간 지역에 둔다. 필요에 따라서 각 지역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3-1 조 (해산)

본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 4 조

퀸즐랜드 주 한인회는 단체가 위치한 호주와 퀸즐랜드의 법을 준수하며, 분쟁이 생길 시 호주와 퀸즐랜드의 법을 따른다. 본 정관과 호주 퀸즐랜드 Model Rule이 충돌할 경우 호주 모델 룰을 따르며, 모델 룰을 정문으로 한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5 조 (회원의 자격)

1. 정회원

한국인과 그 배우자 및 자손으로 퀸즐랜드 주에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 하는 만 18세 이상의 영주권자 및 시민권 자로 한다. 단 한국인 제3국 시민권 자로서 호주 정부에서 영주권자로 인정할 경우에는 본회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2. 준회원 : 본회의 준 회원은 만 18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소지한 학생비자,워킹홀리데이 비자, 호주 내 단기 체류 목적으로 거주하는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호주 퀸즐랜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회장 또는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의결권, 발의권이 주어지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정회원만이 갖는다.
3. 본회 회원은 정관 및 총회와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민사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한국인의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
4. 회원은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및 협조하는 의무를 갖는다.
5. 회원은 소정의 양식에 의거 본회에 등록할 의무를 갖는다.

제 7 조 (상벌 규정)

1. 포상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포상할 수 있다.

2. 징계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교민사회에 법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본회에 누를 끼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3. 징계의 종류는 공개사과 및 경고장 발부, 6개월로부터 1년간 회원자격 정지 또는 제명처분 등으로 구분한다.

4. 징계 전에 당사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해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6개월 이상 징계 시는 총회에서 참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 8 조 (구성)

본회의 구성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회장, 사무총장 1인 및 운영위원 6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은 각 지역별로 안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권한 및 의무)

1. 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의회를 주관하고 그 결의사항을 집행하며 임원 추천 및 임명권을 갖는다. 회장은 매 회계연도에 한인회 제반 서류 및 재산을 관리 보관해야 하고 재임 중 적

자 운영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회장은 한인회 정통성을 계승하여 각종 행사를 주관해야 한다.

2. 수석 부회장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 직무를 잔임기간 동안 대행한다.

3. 재무담당 부회장

재무담당 부회장은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며, 자금조달 방안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4. 각 지역의 지회장은 그 지역을 대표하며, 회장단의 임원으로서 업무 수행을 한다.

5. 사무총장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모든 행정 및 재무 서류를 정리, 관리하고 본회의 실무를 담당한다.

6. 운영위원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각 분야별 업무를 수행한다.

제 10 조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기간은 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이다.
4. 본회의 임원은 징계 및 회장이 임명 해지 했을 경우 그 직을 상실한다.

제 11 조 (자격)

회장 입후보 자격은 2년 이상 퀘즐랜드주에 거주하고 정회원의 의무를 수행한 자로서 법적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제 12 조 (탄핵)

1. 회장 및 임원이 정관에 규정된 임무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개인적 또는 정치적으로 본회를 오용하는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하여 차별되거나 본회에 피해를 초래했다고 인정될 때 탄핵의 대상이 된다.
2. 탄핵의 범위는 감사 및 자문회의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3. 탄핵의 결정으로 해당되는 임원은 파면되며 민, 형사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장 감 사

제 13 조 (자격)

감사의 자격은 2년 이상 퀘즐랜드주에 거주하고 정회원의 의무를 수행한 자로서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며 감사의 수는 2인으로 한다.

제 14 조 (구분)

1. 감사는 정기감사, 수시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2. 정기감사는 연 1회로 한다. (한인회관 건립기금 포함)
3. 수시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4. 특별감사는 감사의 직무가 수행되지 않을 시 정회원 20명 이상의 서명으로 할 수 있다.

제 15 조 (임기)

감사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에 준한다.

제 16 조 (직무)

1. 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및 회계감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위법 부당한 사항을 변경하고도 이를 무시하거나 고의로 은폐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권한)

1. 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2. 탈법적인 행위 적발 시 즉시 운영위원회에 통보하고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3. 감사결과는 총회에 보고함을 원칙으로 하며, 한인 회보 및 지상을 통해 보고할 수 있다.

제 5 장 총 회

제 18 조 (구분)

1.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임시총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 19 조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나 회장선거 년도에는 11월 중에 실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 2/3 또는 정회원 50명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해야 한다.
3. 총회의 의장이 회장이 되며 회장은 안건을 명기하여 소집일 7일 이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총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 감사 및 정회원 30명 이상의 공공 서명으로 발의하여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안건을 처리한다.

제 20 조 (의결사항)

총회는 본회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장단 선출 및 해임과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3. 사업보고 및 감사보고에 관한 사항
4.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5. 회비 및 한인회관 건립기금에 관한 사항
6. 상설기구의 설립 및 해체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 및 회원의 발의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징계 및 탄핵에 관한 사항
9.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10.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1 조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정회원 1/3이상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며 단성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참석 정회원 20명 이상으로 총회 정족수가 설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총회의 정원 부족인 경우 어떤 안건도 처리할 수 없다.
3. 총회의 의사결정은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장 회장단

제 22 조 (구성)

1.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지회장,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부회장과 사무총장의 임명 및 해임의 권한을 갖는다.
3. 지회장은 관할 지역에서 선출한다.

제 23 조 (권한 및 의무)

1. 회장은 부회장, 지회장,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제 20조의 사항을 수행한다.
2. 회장단은 각 지역의 연례행사와 숙원사업을 고려하여 지역 편중이 없이 행사를 하도록 노력한다.
3. 회장단은 총회에서 위임된 사업을 필요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권한과 의무

가 있다.

제 7 장 운영위원회

제 24 조 (구성)

1. 운영위원회는 회장단을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 또는 해임하며 회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제 25 조 (기능)

1.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축소 기관으로서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수시로 회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2. 임기는 제 10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 26 조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정수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부 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한다.)

제 27 조 (의결사항)

1. 사업계획 및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2.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에 관한 사항
3. 회원 자격심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청원 심사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5.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6. 한인회 행사 및 간행물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임원이 부의하는 사항

제 8 장 재 정

제 28 조 (구분)

본회의 회계는 일반 회계를 기본으로 하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 29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호주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30 조 (수입)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공공기관의 찬조금, 회사금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며 필요에 따라 목적 모금을 할 수 있다.
2. 회비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1 조 (지출)

1. 본회의 재정은 승인된 예산에 따라 사용 관리하며 모든 수입은 본회의 명의 계좌로 입출금한다.
2. 지출은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중 두 사람의 공동결재로 이루어진다.
3. 경상 운영 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의 지출은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긴급을 요할 시는 사전 지출하고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 32 조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1. 회장은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고 한인회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에 회계연도 정기총회에서 보고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포함한 사업결산내용은 퀴즐랜드주 한인회 홈페이지에 회계연도 정기총회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한다.

제 9 장 한인회장 선거

제 33 조 (회장 선거 일시)

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당해 년도 11월중에 회장이 공고, 실시하여야 한다.

제 34 조 (선출방법)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2.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다 득표자와 차점자 간의 2차 투표를 하여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동점표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 35 조 (후보 등록)

1. 회장 입후보 등록은 회장 1인과 20명 이상의 정회원 또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사무총장 1인과 정회원 추천인 10명으로 등록할 수 있다.
2. 입후보 마감일은 정기총회 3주 전에 마감하여 정기총회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 (차기 회장 미선출시)

현 회장의 임기를 2개월 연장하여 차기 회장을 임시 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 10 장 퀴즐랜드 한인회관 건립추진 및 자문회의

제 37 조 (목적)

본회는 한인회관 건립기금 조성 및 관리와 본 한인회의 기능의 상실 시 그 기능이 정상화 될 때까지 임시운영 관리하는 기능을 갖는다.

제 38 조 (구성)

1. 자문위원은 5-9명으로 하며 전직회장 또는 한인회에 공로가 있는 정회원으로 현직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자문위원 임기는 2년이며, 연임 할 수 있다.
3. (부칙) 건립 추진위원회는 한인회관 건립 기금 조성을 위해 기금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한인회관을 마련함에 있어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위원은 7-10 명으로 하며, 건립 추진위원회에 참여를 위해서는 전/현직 회장단의 3명 이상의 추천과 현 건립 추진위원회의 2/3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39조

개정에 의한 삭제

제 11 장 한인회관 건립기금

제 40 조 (의의)

1987년부터 기금을 조성한 한인회관 건립은 교민의 염원사업으로 한인회장을 비롯한 전회원이 합심하여 건립기금 증식을 적극 추진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한인회관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제 41 조 (관리)

1. 한인회관 건립기금은 한인회 명의로 은행구좌에 입금되어야 하며 매년 정기총회에 결산보고 및 매년 정기총회에 결산보고 및 연 1회 이상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2. 인출 시는 운영위원회 및 퀴즐랜드 한인회관 건립 추진 및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총회참석 정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한인회관 건립기금은 한인회관 매입 또는 건립 이외의 용도에는 인출할 수 없다.

제 42 조 (운영)

한인회장 및 한인회관 건립 추진 및 자문회의 의장은 건립기금을 회사금 및 한인회 사업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

제 12 장 한인회 주소록

제 43 조 (제작 및 운영)

1. 한인회의 주소록은 2년 임기 중 1회 (혹은 2회) 한인회 주관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2. 견적은 3개 업소 이상의 견적을 받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3. 한인회 주소록에 한인회 정관을 삽입해야 한다.

제 13 장 정관 개정

제 44 조 (정관 개정)

1. 정관 개정의 발의는 운영위원회 또는 정회원 30인 이상의 서명요구에 의하여 발의된다.
2. 회장은 발의안을 총회 3주 전까지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발의된 정관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정회원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4. 개정된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받은 날부터 구 정관을 대치한다.

제 45 조 (한인 복지회)

1. 본회의 산하에 한인복지회를 둘 수 있으며 본회는 운영을 자문하고 협조한다.
2. 한인복지회는 별도의 세칙을 둘 수 있으며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한다.

제 46 조 (한국어 방송)

1. 본회의 산하에 한국어 방송을 둘 수 있으며 본회는 운영을 자문하고 협조한다.
2. 한국어방송은 별도의 세칙을 두며 한인회의 보조금 및 자체 조성한 기금으로 운영한다.

제 47 조 (한인 경로회)

본회의 산하에 퀸즐랜드 한인경로회를 두고 운영에 대하여 자문하고 협조한다.

제 48 조 (해체 및 취소)

본회가 해체 및 취소될 경우에 본회의 모든 재산은 호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장 한인회 사업

제49조 (위원회 설립)

1. 본 한인회 발전을 위해 신규사업이 필요할 시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정회원 참석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설립한다
2. 본회 사업 위원 임기는 사업의 종료와 동시에 그 직을 마감 한다. 만약 계속 사업일 경우 회장 임기와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제50조 (위원회 설립)

정관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51조

정관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

제52조 부칙 (개정일)

개정 : 2023년 2월 11일

개정 : 2016년 4월 21일

개정 : 2013년 8월 3일

개정 : 2009년 8월 29일

개정 : 2006년 8월 19일

개정 : 2001년 6월 9일

부칙 - 제10장 제38조 건립 추진위원회

	이름	직책	연락처 (이메일)
1	이 문 환	제23대 퀘즐랜드 한인회장	richard@ht123.com
2	현 광 훈	제10대 대양주 한인회 총 연합회 회장 제24,25대 퀘즐랜드 한인회장	ghyun58@gmail.com
3	김 형 남	제27대 퀘즐랜드 한인회장	stevenhyoung@hotmail.com
4	김 광 연	제10,11대 골드코스트 한인회장	austko0408@gmail.com
5	김 태 성	제27대 퀘즐랜드 한인회 외부 감사 제26대 퀘즐랜드 한인 부회장	tskim0601@gmail.com
6	양 경 민	제27대 퀘즐랜드 한인회 외부 감사	tony@tamna.com.au
7	김 은 총	제25,26,27대 퀘즐랜드 한인회 재무부장	chriskimacc@gmail.com